

畜産長期發展對策(下)

農林水産部

3) 가축개량사업의 본격적 추진

〔“國立種畜院”을 가축개량사업의 추진모체로
 기능전환〕

○ 직제개정으로 기능개편

〈현 행〉 〈개 편〉

-優良種畜 생산보급 ⇨ 가축개량업무 총괄

○ 가축개량 기본방침에 따라 실질적인 가축개
 량사업의 총괄추진

-道種畜場, 축협, 種畜改良協會 등 관련기관
 과 연계

〈주요추진사업〉

- 가축개량의 총괄분석
- 가축능력검정 및 검정중축의 선발
- 가축개량기술 개발 및 보급
- 가축개량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보급

4) 축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생산비 절감대책 의 적극 지원

가. 축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양축자금
 지원확대

○ 축산경영비의 50%수준까지 확대공급('90 :
 1,700억원)

나. 시설자동화 등 축산업 시설개선자금의 지
 원('90 : 83억원)

○ 소, 돼지, 닭 사육 및 축사시설 개선(自動
 給餌 급수, 환기시설 등)

○ 축산기계화 단지 지원(트랙터, 수확기 등)

다. 생산비 절감을 위한 축산관련세제 개선
 추진

3. 축산물 유통개선의 지속적 추진

현황 및 문제점

○ 산지가축시장시설의 낙후 및 도축장, 도매
 시장운영 부실

○ 육류등급기준 미비로 공정거래 미정착

○ 생산위주의 축산업 구조로 효율적인 수급관
 리업무 至難

1) 가축시장을 生畜유통의 거점시장으로 육성
 (311개소→150)

○ 사육분포, 교통·도로사정 등 고려, 장기
 가축시장 정비방안 수립추진

○ 차량진입로, 전천후계류장, 휴게실 등 양축
 가 편의시설 중점개선

○ 시장거래 활성화를 위한 회전자금 지원

2) 도축장 운영의 합리화

○ 도축장 권역화 및 근대화사업의 지속적 추
 진 : 180→65개소(직할시 제외)

○ 부분육 유통센터(Packing Plant)의 설치
 지원

○ 시설 근대화된 특급도축장의 육가공시설 등
 병설로 식육유통센터 추진

3) 축산물도매시장 증설 및 기능강화

○ 축산물도매시장(공판장)의 연차적 개선험대
 : ('89)9→('90)11→(2001)17개소

○ 생축유통체제를 枝肉 및 부분육 유통체제로
 점진적 전환

4) 양계산물 유통개선

○ 계란집하장(G.P센터) 및 공판장 설치로 유

통마진 축소('91~2001: 27개소)

- 도축장시설 근대화로 위생적 육계공급체계 확립('91~2001: 10개소)

5) 육류 등급제 실시로 육류상품성 제고, 가축개량 촉진도모

- 육류등급제 실시에 대한 근거법령 마련(축산법 개정: '90년도중)
- 등급 육류의 유통가능 지역고시 및 등급판정의무화
- 실시대상: (1단계) 서울 3개 도매시장→(2단계)지방 6개 도매시장→(3단계)전지역 도축장
- 소매단계에서의 육질·부위별 차등가격화로 공정거래 유도
- (현행)종구분없이 부위별로 가격차등
- (개선)품종별, 수입최고기 등으로 부위별 차등가격화

6) 축산물 가공업의 적극지원 및 육성

- 단순 축산물 생산에서 식품차원으로 축산업 구조 개편(1,2차산업 병행육성)
- 공급과잉 등 수급불균형시 효율적인 대책추진으로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
- 식품소비의 질적 고급화 추세에 대비 돈육, 계육, 치즈 등 축산물 가공산업의 적극 육성

4. 사료자원의 적극 개발과 사료수급안정

현황 및 문제점

- 粗飼料 생산기반 미흡으로 생산비 증가 등 경쟁력 약화

(사료수급전망)

	'89	'90	'96	2001	2001/'89
	千%				倍
○ 농 후 사 료	1,114	11,674	14,655	17,364	1.6
- 배 합 사 료 (수 입 원 료)	10,498 (7,692)	11,030 (8,229)	13,921 (10,558)	16,568 (12,565)	1.6 (1.6)
- 농 가 자 급	616	644	734	796	1.3
○ 粗 飼 料	5,825	6,044	7,056	7,510	1.3
합 계	16,939	17,718	21,711	24,874	1.5

- 粗飼料생산 기피 및 배합사료 이용 증가
- 사료원료 수입제한 및 배합사료 제조업의 허가제 등 경쟁제한 요인 상존

1) 사료자원의 적극개발과 초지조성제도 개선

- 가. 실수요자 위주의 민간초지 개발 확대
- 全산림에 대한 초지개발가능지 조사(산림청 산지자원화계획과 연계)
- 조사기간 및 대상: '88~'92년까지 6,524千ha 조사
- 조사방법: 지형 및 土性 등에 따라 초지 등 용도별 이용가능지 구분 조사
- 농어촌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역별 초지개발 계획의 수립
- 초지조성 지원, 여건 개선
- 조성비 이외 기반시설비(도로, 수자원 등) 및 축사 등 부대시설비의 지원
- 초지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계구입자금 지원 나. 초지의 공영개발에 의한 낙농단지 조성 추진
-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보아 사업규모의 점진적 확대
- 시범조성규모: 1단지 50~100ha(5~10戶참여)
- 개발방법
- 주 관: 도지사(시장, 군수)
- 사업내용: 국·공유지를 대상으로 초지 및 부대시설(진입도로, 수자원, 전기시설 등)을 국가가 개발)
- 초지 및 시설의 이용
- 도시근교 또는 낙농업 후계자 등 이주희망자를 모집하여 장기임대 또는 분양 이용
- 지원시책
- 축사, 건물, 기계설치 등 운영비의 장기저리

용자 지원

-공영초지입주자에 대한 입주전 소유목장의 양도소득세 면제 검토

다. 초지관리 제도 개선

○ 초지법 개정으로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체계 확립('90~91)

-초지조성지원 강화 및 既成초지 사후관리 대책

-타용도전용 등 보완 불가능한 초지의 현실화

-부실관리 초지의 초지조성구역 고시의 해제 등

○ 「초지·사료작물연구소」 설치

-농촌진흥청 맥류연구소의 기능 개편

-초지조성기술연구 및 유량종자 육성보급

라. 사료작물 재배 확대

○ 畚裏作 사료작물 재배

-畚作地帶 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계약 재배

-種子代 지원(40%)과 재배 및 이용기술 보급

○ 불량농지 및 유휴농지에의 靑刈用 사료작물 재배 확대

마. 부존사료 자원의 개발이용 확대

○ 稿稈類(벼짚, 보리짚)의 암모니아처리 등 이용기술 보급 확대

○ 엔시레지, 건초 등 粗飼料 가공이용 보급

2) 유통사료 수급안정

가. 사료수급 및 가격안정

○ 배합사료 원료의 수입자유화 확대 : 옥수수, 콩, 보리를 제외한 사료곡물('91)

○ 축협사료공장 시설확대 등으로 생산자단체의 시장점유율 제고(23→30% 이상)

○ 배합사료공장 허가제를 제외('91)→자가배합사료 이용체제 전환(장기)

나. 배합사료 제조기술 개발 및 품질강화

○ 濃厚飼料와 粗飼料를 이용한 완전 배합사료(T.M.R) 생산공급체계 확립

○ 분말사료에서 펠렛, 후레이크, 크럼블 등 다양한 제품 생산

○ 사료원료의 다양화로 사료품질 향상과 경제성 제고

○ 수입원료의 수입선 다양화에 대처한 사료품

질 검사기능 강화

-유해물질, 아플라톡신 등 유독성분의 철저한 검사로 축산물 및 국민보건의 안전성 확보

-사료원료 및 배합사료의 국정검사 실시로 공정성과 신뢰도 향상

5.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

1) 수입개방에 따른 완전대책

현황 및 문제점

○ GATT/BOP협약의결과 1990년부터 국제수지 조항 援用 중단

-1997년까지 유예기간중 단계적 수입자유화 불가피

○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수입자유화에의 대응력 微弱

가. 단계별 자유화 추진계획

구	분	품	목
1단계	既 豫 示	○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	
2단계	유예기간중	○ 품목의 형태·보관·운송면에서 수입이 사실상 어려운 품목 ○ 일정기간 경과후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품목	
3단계	개 방 유 보	○ 수입자유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품목	

나. 보완대책

○ 축산장기발전대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축산업의 구조조정 촉진

○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제고

○ 축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의 법제화로 자율조절 유도

○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활용 및 할당·조정관세 등 활용을 통한 수입 조절

○ 수입축산물의 안정성 검사와 동물의 검역 및 위생기준 강화

2) 수출 유망품목의 개발 및 지원 강화

돼지고기

- 돼지고기 수출목표량 : ('89)12→('90)15→(2001)70千㎏
- 수출규격돈 생산지도 강화(현행 90→110kg)
- 돼지고기 전용도축장 설치 허용으로 위생돈육 생산
- 냉동육을 냉장육수출전환유도를 위해 시설 개선추진
- ('89)10억원(3개소)→('90)10억원(3개소)→('91~2001)33개소(330억원)

닭고기

- 계속 가공산업육성으로 닭고기 수출 촉진('89 : 40만\$)
- 시설자동화, 사료비 절감으로 경쟁력제고 및 신제품 개발유도

한우

- 한우의 적정가격 및 적정사육두수 확보 위해 生牛 수출기반 지속유지
- 生牛를 쇠고기수출로 전환 유도 : 일본의 和牛 수준 육질개선 추진

특수가축(꿀벌, 사슴, 토끼 등)

- 축종별·지역별 특성에 따라 소득원 품목으로 육성, 수입대체산업화 유도

3) 검역 및 방역사업 강화

현황 및 문제점

- 축산물의 수입증대로 해외 악성전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 증대
- 부정축산물의 유통증가와 안전성 검사기능 미흡
- 가. 동물검역소 기능강화
- 조직 : 현 본소 2과 5개지소 ⇨ 본소 4과 5개지소, <('89) 119명 ⇨ ('90) 162명>
- 수입대상국의 위생상황 또는 국내 여건에 따라 정밀검사실시의 탄력적 운영
- 나. 축산식품 有害殘留物質 검사 강화
- 동물약품 誤·濫用 방지를 위한 사용안전기준 제도

- 검사대상물질 확대 : 현 27종→64종 확대
- 유해잔유물질검사 등 정밀검사 장비현대화
- 다. 축산물 수입개방 및 수입지역 다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「국립축산물위생검사소」를 신설 추진

-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국립동물검역소 업무중
-수출입 축산물 잔유물질 검사업무 |
| ○ 가축위생연구소 업무중
-내수용 축산물 잔유물질 검사업무 |



- | |
|---|
| ○ 국립동물위생검사소(신설)
-축산물 잔유물질 검사업무 총괄 관리 |
|---|

6. 축산공해방지대책

현황 및 문제점

- 축산폐수에 대한 배출규제 강화로 생산비가중
- 축산폐수의 환경오염도 증가에 따른 민원 야기

1) 가축분뇨의 자원화 재활용

- 분뇨 비료화 이용
-固型糞의 비료화로 생산·판매가 가능토록 제도개선
- 분뇨 사료화 이용
-鷄糞 볏짚사료, 톱밥발효사료 등 家畜糞 사료개발 추진

2) 가축분뇨처리사업의 지원강화

- 법적규제대상(전·기업축산)농가 : 自負擔 또는 환경처 관련기금(국비)에서 정화조 설치비 지원
- 법적규제 이하 영세양축농가 지원
-분뇨저장탱크 및 간역정화조 시설지원
-지역축협에 분뇨처리장비(攪拌機, 살포機, 車輛, 체인브릭 등)를 지원
지역축협에서 가축분뇨를 수거, 초지 및 농경지 등에 살포
- ※ 가축분뇨 처리 절차

농가: 농축분뇨 저장탱크 설치 ⇨ 지역축협:
분뇨 수거, 운반, 살포

3) 가축분뇨 처리 대행회사 설립

- 축협중앙회 자회사로 설립 또는 요건 및 시설을 갖춘 민간업체를 지정
- 대행회사의 분뇨처리 절차
- 가축농가와 대행회사 사이에 수거계약 체결 ⇨ 대행회사에서 분뇨 수거 ⇨ 과수원 또는 임야 등 살포 ⇨ 축산농가 및 수해농가에서 대행회사에 수거비(실비) 및 液肥金額 지불

4) 축협중앙회에 축산공해 방지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로 종합대책 강구

7. 축산기술지도 강화 및 축산단체 기능 강화

현황 및 문제점

- 耕種作物爲主의 농촌지도기능으로 축산기술 보급체계 미흡
- 축산단체는 협조를 위한 협조체제 不備

1) 농촌진흥청의 축산지도기능 강화

- 농업전문지도사 육성위주에서 축산전문지도사 양성으로 전환
- 시·군농촌지도사의 축산지도능력 제고

2) 양축가단체협의회 구성 운영

- 중앙단위, 도단위, 군단위로 협의회 구성
- 주요 기능
 - 畜産懸案에 대한 대응방안
 - 단체간 협의조정 문제 및 대정부 건의사항

IV. 축산발전종합대책 자원별 투융자 계획('90~2001)

가. 자원별 투융자계획

사업명	'90~2001				
	계	국비 및 지방비	畜振基金	농어촌 발전기금	축협자금 및 기타
계	20,234 億원	5,399	7,300	1,355	6,200
1.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	7,960	3,015	4,027	-	918
2.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	2,567	143	2,024	-	400
3. 축산업 구조개선	5,920	1,000	115	932	3,873
4. 축산물 유통개선	1,742	135	700	93	814
5. 사료수급안정	1,407	585	333	294	195
6. 축산물 수입개방대책	378	352	26	-	-
7. 축산공해 방지대책	283	247	20	16	-
8. 축산기술지도 강화 및 축산단체기능 활성화	55	-	55	-	-

나. 年次別 投融資計劃

	'89	'90~2001		
		'90	'91~2001	계
	億원			
1. 국비 및 지방비	238	168	5,231	5,399
2. 畜振基金	778	1,174	6,126	7,300
3. 농어촌발전기금	-	83	1,252	1,335
4. 축협자금 기타	1,031	1,793	4,407	6,200
계	2,047	3,218	17,016	20,234

3) 축협을 축산발전 및 양축가단체의 중심조직체로 발전

- 축협의 사업수익의 일부를 각종 협회 등의 운영비로 지원

V. 금후추진계획

1. 법령개정 추진사항

- 축산법 개정(가격안정, 수급조절, 육류등급제 등)
- 낙농진흥법 개정(낙농진흥사업회)
- 조세감면규제법 개정(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의 영세율 적용)
- 초지법 및 사료관리법 개정
-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

2. 제도개선 및 행정조치

- 기구개편 및 설립
 - 國立種畜院 기구 개편(가축개량 기능)
 - 낙농진흥사업회 설립
 - 축산분뇨처리대행회사 설립
 - 국립축산물 위생검사소 신설
 - 농촌진흥청 축산지도국 및 초지·사료작물연구소 신설
 - 육류 등급제 시행사항
 - 낙농지대 지정에 관한 사항

VI. 2000년대 한국축산의 모습

국민경제

총 인 구 (천 명)	42,380	47,179
1 인 당GNP(US\$)	4,968	18,080
경 제 정 책 기 조	개방경제진입	개방경제정착
국 민 영 양	영양수준향상	영양구조개선

축산물수요

축산물수요형태		대중식품화	필수식품화
육류	총 량(千%)	770	1,504
	1 인 당(kg)	18	32
	(최 고 기)	(3.4)	(5.7)
우유	총 량(千%)	1,642	2,975
	1 인 당(kg)	39	63

가축사육

소 (千頭)	한 우 젖 소 계	1,536 515 2,051	2,308 638 2,946
돼 지 (千 頭)	담	4,801 61,689	9,014 99,127

농가경제

농 업 인 구 비 중(%)	16.0	10.4
GNP중 농림수산업비중(%)	10.2	7.4
호 당 농 가 소 득 (千 원)	9,437	25,580
호 당 농 업 조 수 입(%)	8,212	13,777
- 축 산 조 수 입(%)	1,461	4,105
(축 산 조 수 입 비 중)	(17.8)	(29.8)